

의안번호	2208054
의 퇴 인	이용우 의원
회 답 일	2025.2.21.
추계번호	25B078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육아휴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 대한 돌봄을 하려고 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와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 대한 돌봄을 위하여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제1항)	재량·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9조(육아휴직)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2	안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2. 상세 사유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의 사용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는 근로자임¹⁾
 -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최대 2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²⁾
 - 참고로, 20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52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는 3회로 확대될 예정임³⁾
- 개정안은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때 사용한 육아휴직을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은 육아휴직의 사용 대상에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있는 남성 근로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사용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육아휴직의 사용이 증가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상자의 수와 이들의 사용기간을 추계하여야

1)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률 제1817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법률 제2052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하나, 개정안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내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곤란

- 참고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2024년에는 14,522명의 근로자가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 사용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육아휴직 수급자 수(명)	77	10,290	12,791	14,522
평균 육아휴직기간(개월)	3	3	3	3

주: 1.초회수급자수 기준(해당 휴직기간에 대한 최초 급여 수급건수)

2.평균 육아휴직기간이란, 임신 기간 중 사용한 육아휴직의 평균 사용기간

자료: 고용노동부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